

신탁계약 해지상황 보고서

공개대상자									
성명		소속			직위			직급 등	
순번	계약해지자				주식명	신탁 일자	수탁 가액 (천원)	변동 가액 (천원)	비고 (해지일자)
	성명 (관계)	소속	직위	직급 등					
해지 사유 (해당 항목에 "√" 표시)	[]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통지 []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매각 [] 주식백지신탁대상자에서 제외 [] 주식백지신탁대상자의 직위가 변경된 경우로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관리·운영 중인 주식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 통지 [] 공개대상자 등의 이해관계자로서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가 되었으나 사후에 고지거부 허가되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에서 제외							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0제3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당사와 체결된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공직자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합니다.

 년 월 일

(수탁기관의 장)

(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작성방법

1. '소속', '직위' 및 '직급 등' 란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 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 다만,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전보 등 신분상의 변동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소속기관명, 직위 및 직급 등을 적으십시오.
2. 공개대상자와 계약해지자가 다를 경우 계약해지자의 성명 아래에 괄호로 공개대상자와의 관계를 적으십시오. [예: (배우자)]
3. 수탁가액은 최초 신탁계약 체결 시의 신탁재산액을 적으십시오.
4. 변동가액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평가된 신탁재산액을 적고, 신탁재산 운용보고서 등 세부내용은 별도 첨부하십시오.
5. 비고란은 해지일자를 비롯한 기타사항을 적으십시오.